

# 코미코

## 공정거래법 준수 규정

제정 : 2023년 11월

공정한 거래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이며,  
거래 상대방과의 상생을 위해 윤리와 법규 준수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모자람이 없습니다.  
이에 임직원 여러분께 아래사항을 당부 드리오니, 반드시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.

## 임직원 기본원칙

- 1)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나 사내 규정 등을 위반 할 가능성이 있거나 위반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 및 윤리경영 담당부서 (인사/구매)에 사전에 보고·문의 등을 통해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.
- 2)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, 본인 또는 타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사실 또는 위반 소지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공정거래 및 윤리경영 담당부서 (인사/구매) 에 알려야 한다.
- 3) 임직원은 법령과 규정에 위반되는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며, 계속해서 위와 같은 지시의 이행을 강요 받을 때에는 즉시 이를 윤리경영센터에 제보 하여야 한다.
- 4) 각 부서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준법 여부를 감독하고, 준법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5) 모든 임직원의 본 규정 준수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하고,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.
- 6) 본 규정을 위반할 시 내부 상벌 규정에 따른다.

## 공정거래법 규정

### •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행동 규정

- 1)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다.
- 2)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3)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만을 거래조건, 서비스 등 차별하여 거래하지 않는다.
- 4)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동시에 거래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에 비해 비계열회사에 대한 결제조건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### • 부당지원 행위 관련 행동 규정

- 1) 당사와 거래를 원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에 거래 개시에 대한 대가로 해당 거래와 무관한 부당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.
- 2) 거래 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업체가 달성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것을 빌미로 거래 물량 축소, 거래중지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.
- 3) 거래 사업자의 제품 등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불법적 금품을 제공받지 않는다.
- 4) 업체가 당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이유로 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,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래 종료 등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.
- 5) 합리적 이유 없이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받지 않는다.

### • 공급업체와의 거래 시 행동 규정

- 1) 공급업체 등이 다른 고객들과 사업 하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.  
단, 공동개발 등 별도의 계약조건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는 계약 조건을 따른다.
- 2) 공급업체 등이 당사에 대한 기밀 또는 경쟁 관련 민감한 정보를 다른 고객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.
- 3) 공급업체들에게 다른 고객들의 기밀 또는 경쟁 관련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.
- 4) 공통의 공급업체 등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다른 공급업체들과 논의하지 않는다.

## 하도급법 분야

### • 하도급법 거래 행위

: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,수리,건설 또는 용역 위탁을 한 행위

: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, 수리 건설 또는 용역 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,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제조, 수리, 시공하거나 용역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,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

### • 하도급법 행동 규정

- 1) 표준계약서가 아닌 양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에 대해 반드시 법무부서 사전 검토를 거쳐 하도급법 위반소지(부당특약 등)가 있는지를 확인한다.
- 2)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은 하도급법상 규정에 맞게 지급 해야한다. (15일·60일 이내, 현금비율 유지)
- 3) 거래 상대방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, 변경 하거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.
- 4) 업체로부터 수령한 기술자료는 해당 요구서, 비밀유지계약 내용에 따라 유용·유출하지 않는다.
- 5) 업체의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하도급법 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한다.

## 공정거래 법규

법령	주요내용	관련부서
공정거래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당한 공동행위(담합) 금지</li> <li>-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</li> <li>-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규제</li> <li>- 부당지원 행위, 통행세 금지</li> <li>-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제공 금지</li> <li>- 부당 기업결합의 제한</li> <li>-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</li> </ul>	- 전부서
하도급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</li> <li>- 부당한 특약의 금지</li> <li>-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</li> <li>- 선급금의 지급</li> <li>-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</li> <li>- 부당반품의 금지</li> <li>-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</li> <li>-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</li> <li>-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구매,회계,자금부서</li> <li>- 그 외 하도급 거래업체 협업하는 전 부서</li> </ul>

본 규정은 대내외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.

코미코는 기본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, 경영진은 이러한 기대 수준을 임직원들에게 소통하고 기준에 부합해 행동하도록 노력합니다.